

# 2019학년도 전주서원초 학교규칙 개정(안)

|            |   |
|------------|---|
| 안 건<br>번 호 | 1 |
|------------|---|

발의연월일 : 2019. 7. 8.  
제 안 자 : 학교장  
담당자 : 최성준

## 1. 제안이유

- 가.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의거 제정·시행되고 있는 학교규칙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 등으로 인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나. 학교규칙 중 수정되어야 할 사항과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여 재정비하기 위함.

## 2. 관련근거: 내부결재 전주서원초-(2019. 3. 27.)

## 3. 주요내용

- 가. 휴업일 등에 관한 내용
- 나. 수업운영에 관한 내용
- 다. 출결처리에 관한 내용
- 라. 취학의무의 면제, 유예 내용 보완, 의무관리위원회 설치(신설)
- 마. 기타의 비용 징수
- 바. 포상, 징계에 관한 내용
- 사.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관한 내용
- 아. 학칙개정 절차에 관한 내용

붙임 1. 전주서원초 학교규칙 개정안 1부.

2. 전주서원초 학교규칙 신·구 대조문 대비표 1부. 끝.

# 전주서원초등학교규칙

개정(1999. 3. 3 관리 제280호)

개정(2002.12.23 관리 제1937호)

개정(2006. 2.15 서원초-1115호)

개정(2011. 4. 15 서원초 3935호)

개정(2015. 2. 9 서원초- 896호)

개정(2019. 4. 12 서원초- ○○○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전주서원초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전주시 완산구 오두정길 45에 둔다.(개정 2015.2.8.)

## 제2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조기진급 또는 조기 졸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수업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1999.3.3.)

제5조(학년.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 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개정 2006.2.15.)(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제6조(휴업일 등)

① 본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하계휴가
3. 동계휴가
4. 학년 말 휴가
5. 개교기념일 : 3월 6일

6. 학교장 재량휴업일(2011.4.15.신설)
  7. 주5일제 토요휴업일(2011.4.15.신설)
- ② 학교장은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휴가기간은 법정수업일수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를 실시한다.
- ③ 학교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실습 또는 등교를 시킬 수 있다.
- ⑤ 학교장 재량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제3장 학급수 및 학생정원

제7조(학급 수) 우리학교의 학급수는 전라북도교육감(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 매 학년도에 배정하는 학급으로 한다. (개정02.12.23)

제8조(학생 정원) ① 본교의 학생정원을 전라북도교육감(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 매 학년도에 배정하는 학급당 학생수로 한다.  
② 취학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거나,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1/3이상을 결석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 제4장 교과 및 교육과정.수업일수와 수료 및 졸업

제9조(교과 및 교육과정 등) 우리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4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10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주 5일 전면 실시로 인하여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운영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08)(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제11조(수업운영)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02.12.23)

- ②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③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학교와 협동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 ⑤ 학생의 흥미, 특성과 계절 등을 고려하고 다양한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8조 및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의거 학교간 교환학습 및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⑥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학교에서 정한 출석인정 기간 이내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학교의 출석 인정 일수(연 10일)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보고서 제출 후 '학교장'의 최종 판단에 따라 기타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⑦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1달간의 학교(도·농)간 교환학습(위탁교육)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교환 및 위탁 교육 수용교는 교환 및 위탁 기간중에 본인의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 ⑧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출결처리)

- ①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전염병 등
  2.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
  3. 전출·입으로 인한 소요 일수
  4. 현장체험학습 및 교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학부모동반 교외체험학습 : 연간 10일 이내, 교환(위탁)학습 : 연간 1개월 이내)
  5. 가족 및 친·인척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일수(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함)
  6.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3조(수료 및 졸업)

-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

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 ③ 학교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 ④ 법률 제27조와 동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시행 할 수 있다.(개정 02.12.23)

## 제5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취학의무의 면제 등

제14조(입학시기) ① 본교의 입학시기는 학년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② 본교의 편입학의 시기는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5조(입학결정) 본교의 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 통지를 받은 아동과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교육감(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의 배정과 학교장의 입학허가로써 결정된다.

제16조(편입학) ① 외국체류 중 귀국한 아동의 편입학은 체류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 한다.

- ②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 ③ 제 1항의 편입학 아동은 학교장이 요구하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전학) 본교에서 타교로 전학할 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21조의 규정에 의한다.

## 제18조 (취학의무의 면제, 유예 등)

- ①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하여야 한다.

- ⑤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보호자,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취학 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유예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 제19조 (취학독촉 · 경고 및 통보)

- ①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1.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3.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그 보호자가 학교로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사항을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경과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 중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아동이나 학생이 있는 경우: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⑤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시기에 이르기 한 달 전까지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의 경우: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
  2. 장기결석 학생의 경우: 학년도가 시작될 때

## 제20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1. 취학 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아동(이하 "취학의무대상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서원초등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이하 "의무교육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7항에 따른 전학의 추천에 관한 사항
  -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유예 결정에 관한 사항
  - ③ 그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21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 학생 등의 입학과 전학) 귀국 학생 및 다문화 학생 등에 대한 전입학 절차와 방법은 영 제19조를 따른다.

## 제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제22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①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으로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하거나 상급학교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대상자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 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에 의하여 학교장이 이를 선정한다.
  - ③ 상급학교로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02.12.23)

제23조(조기진급의 범위) 조기진급이란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함을 말한다.(개정 02.12.23)

- 제24조(대상자 선정) ①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과목의 학업성취도가 우수한자 중에서 개인지능 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선정한다.(개정 02.12.23)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1인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는 이를 1인으로 한다.(개정 02.12.23)

제25조(대상자 학습방법) ① 자학자습에 의한 조기 이수(개정 02.12.23)

- ② 이수과정 압축에 의한 조기 이수(개정 02.12.23)

제26조(이수인정 평가) 정기적인 지필 고사와 수시로 실시되는 수행평가를 종합하여 평정한다.(개정 02.12.23)

## 제27조(교과목별 조기 이수인정 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평가위원회는 기획 및 운영 전문가(교감, 교무부장, 연구부장)와 교육과정 전문가(교과담당교사), 학급담임교사 등으로 구성한다.(개정 02.12.23)
- ② 동위원회는 평가 방법 및 일정 결정, 평가도구선정·제작, 조기이수인정기준 결정은 조기이수판정 등과 기타 관련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02.12.23)

## 제7장 기타의 비용징수

제28조(기타의 비용 징수) 학교장은 수익자부담(방과후학교 교육 수강료, 체험학습비용 등)경비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징수 할 수 있다.

## 제8장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제29조 (포상) 포상을 시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포상 규정 및 졸업생 포상 규정을 정한다.

제30조 (징계) 학생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이하 ‘학교생활규정’이라 한다)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9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과 운영

제31조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 ① 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의 조직은 학생의 희망과 지도교사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 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학예·체육·특기와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2. 정서함양과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3.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활동
  4. 각종 봉사활동
  5. 기타 학생신분에 맞는 활동

제32조 (학생자치활동의 운영)

- ① 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자율적·자발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
- ②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담당지도교사의 지도를

받아 활동하도록 한다.

- ③ 학생자치활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교육비에서 지원한다.

## 제10장 학칙개정 절차

### 제33조 (학칙개정 절차)

- ① 학교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의 장이 학칙 개정안을 작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 ② 제1항의 학칙개정은 학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③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 ④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 제34조 (구체적 사항 시행)

본 학칙의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 제35조 (기타 사항)

본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기타 지침, 훈령 및 제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 부 칙(1999. 3. 3. 관리 제280호)

- ① (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1999년 3월 2일로부터 시행한다.
- ② (시행세칙) 본 학교규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 부 칙(2002. 12. 23. 관리 제1937호)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6. 2. 15. 서원초-1115호)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4. 15. 서원초-3935호)**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2. 8. 서원초-896호)**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 . 서원초- 호)**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전주서원초등학교 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6조(휴업일 등)<br/> <b>&lt;⑤항 신설&gt;</b></p>   | <p>⑤ 학교장 재량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p>   |
| <p>제7조(학급 수) 본교(우리학교)의 학급수는 전라북도전주교육청교육장 전라북도교육감(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 매 학년도에 배정하는 학급으로 한다. (개정02.12.23)</p>   | <p>제7조(학급 수) 우리학교의 학급수는 전라북도교육감(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 매 학년도에 배정하는 학급으로 한다.</p>   |
| <p>제8조(학생 정원) ① 본교의 학생정원을 전라북도전주교육청교육장 전라북도교육감(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 매 학년도에 배정하는 학급당 학생수로 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정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02.12.23)</p> <p>1. 유급생<br/>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한다.<br/> <b>&lt;②항 신설&gt;</b></p> | <p>제8조(학생 정원) ① 본교의 학생정원을 전라북도교육감(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 매 학년도에 배정하는 학급당 학생수로 한다.</p> <p>② 취학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거나,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1/3 이상을 결석 한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p> |
| <p>제9조(교과 및 교육과정 등) 본교(우리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p>  | <p>제9조(교과 및 교육과정 등) 우리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p>  |

| 현행  | 개정안  |
|---|--|
| <p><b>제11조(수업운영)</b>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02.12.23)</p> <p>② 현장체험학습은 교과내용별 체험학습장 발굴 활용, 도·농간 교류학습, 가족 등반 체험학습, 흙사랑 체험학습 운영 등으로 나누어 추진한다.(신설 02.12.23)</p> <p>③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교과내용별 관련 체험학습 기간은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체험학교의 형편에 따라 1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운영하고 태마식 현장체험학습 기간은 1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실시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신설 02.12.23)</p> <p>④ 현장체험학습의 활동유형은 역사기행, 자연관찰, 국토순례, 문화유적탐방, 산업시찰, 건학 등으로 한다.(신설 02.12.23)</p> <p>⑤ 운영방안은 이동중심의 타당한 체험학습 운영을 통하여 학습흥미와 동기를 강화하고 이동 각지의 독특한 개성이나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한다.(신설 02.12.23)</p> <p>⑥ 이 외 현장체험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02.12.23)</p> <p>&lt;삭제&gt;</p> <p>&lt;내용 보완&gt;</p> | <p>②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p> <p>③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 학교와 협동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p> <p>④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p> <p>⑤ 학생의 흥미, 특성과 계절 등을 고려하고 다양한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8조 및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의거 학교 간 교환학습 및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한다.</p> <p>⑥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학교에서 정한 출석인정 기간 이내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학교의 출석 인정 일수(연 10일)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보고서 제출 후 '학교장'의 최종 판단에 따라 기타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p> <p>⑦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1달간의 학교(도·농)간 교환학습(위탁 교육)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교환 및 위탁교육 수용교는 교환 및 위탁 기간중에 본인의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p> <p>⑧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p> |

| 현행  | 개정안   |
|---|---|
| <p>제14조(출결처리)<br/>&lt;신설&gt;</p>  | <p><b>제14조(출결처리)</b></p> <p>①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p> <p>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천재지변, 전염병 등</li> <li>2.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li> <li>3. 전출·입으로 인한 소요 일수</li> <li>4. 현장체험학습 및 교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학부모동반 교외체험학습: 연간 10일 이내, 교환(위탁)학습: 연간 1개월 이내)</li> <li>5. 가족 및 친·인척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일수(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함)</li> <li>6.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li> </ol>  |
| <p>제14조(입학결정) 본교의 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통지를 받은 아동과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del>전라북도 전주교육청교육장 전라북도교육감(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del>의 배정과 학교장의 입학허가로써 결정된다.</p>  | <p>제14조(입학결정) 본교의 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통지를 받은 아동과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del>전라북도 전주교육청교육장 전라북도교육감(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del>의 배정과 학교장의 입학허가로써 결정된다.</p>  |
| <p>제17조(취학의무의 면제 등) ① <del>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 또는 유예는 학교장이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와 신청으로 결정한다.</del></p> <p>② <del>취학의무의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del></p> <p>③ <del>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del></p> <p>④ <del>일정기간 외국에서 취학할 목적으로 그 보호자와 동반 체류하는 경우 그 서류와 여권·사본 등을 갖추어 이를 처리한다.</del></p> <p>&lt;삭제&gt;</p> | <p><b>제18조 (취학의무의 면제, 유예 등)</b></p> <p>①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 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p> <p>④ 학교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하여야 한다.</p> <p>⑤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보호자,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 취학 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⑦ 제6항 단서에 따라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유예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p> |

**제19조 (취학독촉·경고 및 통보)  
<신설>**

**제19조 (취학독촉·경고 및 통보)**

①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1.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3.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그 보호자가 학교로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사항을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난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경과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 중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아동이나 학생이 있는 경우: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⑤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시기에 이르기 한 달 전까지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의 경우: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

2. 장기결석 학생의 경우: 학년도가 시작될 때

|  |  |
|--|--|
| <p><b>제20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b></p> <p>&lt;신설&gt;</p>   | <p><b>제20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b></p> <p>① 취학 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아동(이하 "취학의무대상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서 원초등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이하 "의무교육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7항에 따른 전학의 추천에 관한 사항</li> <li>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유예 결정에 관한 사항</li> <li>3. 그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li> </ol> |
| <p><b>제21조</b><br/>(귀국 학생 및 다문화 학생 등의 입학과 전학)</p> <p>&lt;신설&gt;</p>  | <p><b>제21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 학생 등의 입학과 전학)</b> 귀국 학생 및 다문화 학생 등에 대한 전입학 절차와 방법은 영 제19조를 따른다.</p>   |
| <p><b>제28조(기타의 비용 징수)</b></p> <p>&lt;신설&gt;</p>  | <p><b>제28조(기타의 비용 징수)</b> 학교장은 수익부담(방과후학교 교육 수강료, 체험학습비용 등)경비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징수 할 수 있다.</p>   |
| <p><b>제24조(포상)</b>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그만성이 뛰어난 자, 선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포상을 시행하기 위하여 따로 포상규정을 정한다.</p> <p>카.</p> <p>③ 본교 학생의 사상을 내용에 따라 학년협의회 또는 교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 단, 특별상은 예외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교장 상 졸업생(학년별)</li> <li>2. 출결부문 6년 개근상( 6개년에 걸쳐 결석, 자각, 조퇴, 결과기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6년 장근상(6개년에 걸쳐 결석 3회 이내, 자각, 조퇴, 결과기 총 9회 이내인 자에게 수여한다.(2011.4.11.개정))</li> <li>3. 학력상(성취비율이 85% 이상인 자)</li> <li>4. 공로상 :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투철한 국기관과 애교심이 있어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li> <li>5. 선행상 :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방정하여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li> <li>6. 효행상 : 충효정신이 뚜렷하고 옷어른에게 효행심이 자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li> <li>7. 기타 : 교내 외 행사가 기타 학교 운영 필요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학급 또는 학생에게 수여할 수 있다.</li> <li>8. 외부단체상 수시</li> </ol> <p>④ 사상은 주일 1회 기준,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p> <p>⑤ 특별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염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시전화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에 추천을 신한다.</p> <p>&lt;삭제&gt;</p> | <p><b>제29조 (포상)</b> 포상을 시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포상 규정 및 졸업생 포상 규정을 정한다.</p>   |

~~제25조(징계) ① 학생에게 체벌은 금지하며 교육상 필요아니고 인생 알 때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1. 학교 내 통사~~
- ~~2. 특별교육이수(훈육, 훈계)~~
- ~~3. 사회봉사(신설 2011.4.15-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신설 2011.4.15-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특기사항란에 서유 기재 않음)~~

~~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징계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하되, 이를 특수하고 예외적인 상황으로 재한 해석하여야 하며 학생에게 징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며, 세부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1. 교사는 감정에 치우친 징계를 해서는 안된다.~~

~~2. 교사가 제 25조의 징계를 할 때에는 사전에 학생에게 징계 서유를 분명히 인지시켜야 하며 해당 교사는 학교장의 허기를 얻어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개정 2011.3.1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3. 학교장은 제 25조 2항의 특별교육이수와 4항의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 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11.3.1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③ 징계는 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1.4.15. 학생생활규정 반영)(전주 서원초등학교 체벌대체규정 반영 2015. 2. 8)~~

- ~~1. 교사의 반복적인 훈계 등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 ~~2. 남의 권리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신체·정신·인격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 ~~3. 남의 물건 및 물품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 ~~4. 학습태도가 매우 불성실한 경우~~

~~④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이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을 도의적 책임을 진다. (신설 2011.4.15. 학생생활규정 반영)~~

~~<삭제>~~

제30조 (징계) 학생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이하 '학교생활규정'이라 한다)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  |
|--|--|
| <p><b>제31조 (학생자치활동의 조직)</b></p> <p>&lt;신설&gt;</p> <p><b>제32조 (학생자치활동의 운영)</b></p>  | <p><b>제31조 (학생자치활동의 조직)</b></p> <p>① 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의 조직은 학생의 희망과 지도교사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② 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예.체육.특기와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li> <li>2. 정서함양과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li> <li>3.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활동</li> <li>4. 각종 봉사활동</li> <li>5. 기타 학생신분에 맞는 활동</li> </ol> <p><b>제32조 (학생자치활동의 운영)</b></p> <p>① 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자율적.자발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p> <p>②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담당지도교사의 지도를 받아 활동하도록 한다.</p> <p>③ 학생자치활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교육비에서 지원한다.</p> |
| <p><b>제26조(학교규칙개정절차)</b></p> <p>① 학교장은 학교 규칙의 개정안을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개정 공포한다.</p> <p>② 학교규칙은 학교장이 공포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p> <p>③ 본 규정은 학교 운영 위원회,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된다.(2011.4.1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p> <p>④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2011.4.1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p> <p>&lt;학칙 관련 내용 보완&gt;</p> | <p><b>제33조 (학칙개정 절차)</b></p> <p>① 학교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의 장이 학칙 개정안을 작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p> <p>② 제1항의 학칙개정은 학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p> <p>③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p> <p>④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p> <p><b>제34조 (구체적 사항 시행)</b></p> <p>본 학칙의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p> <p><b>제35조 (기타 사항)</b></p> <p>본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기타 지침, 훈령 및 제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p>                       |